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

제정 2013. 12. 26. 국립국어원 예규 제92호 일부개정 2014. 3. 10. 국립국어원 예규 제113호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사용 허가 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3조에 명시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- 제 3 조(사용 시설물의 범위) 국립국어원(이하 '국어원'이라 한다.)의 청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강당 및 강당 운영을 위한 운영실, 준비실
 - 2. 1층의 화장실, 로비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어원이 허가 시 별도로 승인한 시설물
- 제 4 조(사용 범위) 국립국어원장(이하 '원장'이라 한다)은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- 1. 국어와 관련된 행사, 교육, 학술 활동
 - 2. 국어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 - 3. 어문 정책에 관련된 행사
 - 4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제 5 조(사용 신청 및 결정 방법)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1 서식의 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, 주된 소재지,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)
 - 2. 행사의 종류와 명칭, 사용 목적
 - 3. 사용 기간
 - 4. 사용 물품과 집기들의 반입일, 설치일 및 철거일
 - 5. 참가 인원
 - ②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 - ③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④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, 허가서는 별지 2 서식과 같다.
- 1. 행사 차량의 출입 통제
- 2. 상거래 행위의 금지
- 3. 그 밖에 청사 내 직원 및 방문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
- ⑤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원장이 국어원의 업무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.
- 제 6 조(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사용 목적이 제4조의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의 경우
 - 2. 국어원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3. 그 밖에 국어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
- 제 7 조(사용료의 납부 및 환불)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않는다.
 - ② 사용료는「국유재산법시행령」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일 5일 전까 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,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우리 원의 사 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.
- 제 8 조(무료 사용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 - 1.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우
 - 2. 비수익성 행사로서 국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
 - 3. 「국유재산법시행령」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 9 조(사용 승인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를 할 수 있다.
 - 1. 사용 계획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
 - 2. 사용 조건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 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제10조(사용자 준수 사항)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

- 2. 허가받은 사용 기간과 범위에서 사용
- 3. 국어원의 시설물 안전 · 관리 준수

제11조(손해 배상)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
부 **칙** <2013. 12. 26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「국립국어원 시설 사용 규정」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부 <2014. 3. 10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 서식]

(앞면)

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신청서								
신	성 명 (대표자명)			생년	월일			
청 인	직업·근무처 (단 체 명)			전 화	번 호	자택) 직장)		
	주 소							
사 용 기 간		년 년	월 일			(일간)	
하사 < 교육 > 또요	종류 및 명칭							
	사 용 목 적							
	주 요 내 용							
	반입(전시)품의 종류·수량							
	준비차량의 종류 및 수량	화물 ()대	대, 승합()대, 승	용()대			
	참여 (예정)인원	()명						
본인은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, 귀 국어원의 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				년	월	일	
		신청인			(人	(서명 또는 인)		
국립국어원장 귀하								
붙임	행사 계획서 1부							

사용자 준수 사항

- 1.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2. 사용자는 허가 받은 범위의 시설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3.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을 반입·설치·철거할 때에는 국립국어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.
- 4. 국립국어원 부속 시설물인 앰프, 마이크, VTR 등 시청각 관련 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는 관계 직원의 협조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5.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절전과 절수에 솔선수범하여야한다.
- 6. 사용 후에는 모든 시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,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국유재산 [] 유상 사용 허가서

성 명 생년월일

주 소

재산의 표시: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

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()유상]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

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국어원장

격 일

허 가 조 건

제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로 한다.

제2조(사용기간)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사용료)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.

제4조(사용료의 납부)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사용이 취소된다.

제5조(사용료의 반환거부)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7조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사용인의 행위 제한) 사용인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- 1. 사용목적의 변경
- 2.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
- 3.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· 수익하게 한 경우
- 3.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
- 4.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

제8조(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)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)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·감독)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원의 지시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허가서의 해석)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2조(허가 시설물의 범위) 이 허가서에서 승인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강당
- 2. 강당 조정실
- 3. 강사 대기실
- 4. 청사 1층의 화장실과 강당 로비
- 5. 행사에 필요한 주차 **면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